

공간정보기술자의 등급 및 경력인정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

1. 개정이유

공간정보 분야 국가 자격종목으로 신설된 공간정보융합기능사·산업기사 자격시험이 '23년 하반기 시행될 예정으로, 해당 자격 취득자가 공간정보기술자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관련 고시의 개정 필요

일부 누락된 자격종목 추가 반영, 계속 인정되는 폐지된 자격종목 명시, 「국가기술자격법」에 따른 직무분야 재분류 등 공간정보기술자 자격제도 운영의 혼선을 방지하고 관리·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공간정보기술자로 인정되는 국가자격 종목에 신설 및 누락된 종목을 추가하고, 계속 인정되는 폐지된 종목을 명시하며, 종목별 직무분야를 「국가기술자격법」의 직무분야에 따라 재분류함(안 별표 1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없음

라.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

국토교통부고시 제2023-456호

「공간정보기술자의 등급 및 경력인정 등에 관한 기준」(국토교통부고시 제 2021-910호, 2021.7.1., 일부개정)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.

2023년 8월 1일

국토교통부장관

공간정보기술자의 등급 및 경력인정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

공간정보기술자의 등급 및 경력인정 등에 관한 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 칙(개정 2023. 8. 1.)

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지]

[별표 1]

국가자격 종목(제4조제1항관련)

직무 분야	등급	기술사	기능장	기사	산업기사	기능사
토목			*도화		*도화	도화
			*지도제작		*지도제작	지도제작
	지적		*지적	지적	지적	지적
			*측량			측량
	측량및지형공간 정보			측량및지형공간 정보	측량및지형공간 정보	
			*항공사진		*항공사진	항공사진
	해양			해양공학 해양자원개발		
				해양환경	해양조사	
					공간정보융합	공간정보융합
전자				전자계산기		전자계산기
					전자계산기제어	
정보기술				전자계산기조직 응용		
	정보관리					
			*정보처리	정보처리	정보처리	정보처리
	컴퓨터시스템응용			정보보안	정보보안	
				(단일)멀티미디어 콘텐츠제작전문가		
디자인					컴퓨터그래픽스 응용	

[비고] ‘*’ 표기 종목은 폐지된 종목으로 「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」 부칙 “폐지된 종목의 기술자격 취득자에 관한 경과조치”에 따라 계속 인정

폐지 종목	폐지일
도화기능장, 지도제작기능장, 지적기능장, 측량기능장, 항공사진기능장, 정보처리기능장, 도화기능사1급(산업기사), 지도제작기능사1급(산업기사), 항공사진기능사1급(산업기사)	1992.03.01

신 · 구조문대비표

[별표 1] 변경 전

국가자격 종목(제4조제1항관련)

구분	등급	기술사	기 사	산업기사	기능사
토목		측량및지형공간정보 지적	측량및지형공간정보 지적	측량및지형공간정보 항공사진 지도제작 *도화 지적	측량 항공사진 지도제작 도화 지적
전자기기			전자계산기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기사	전자계산기제어산업 기사	전자계산기기능사
정보기술		컴퓨터시스템응용기 술사	정보처리기사 정보보안기사	정보처리산업기사 정보보안산업기사	정보처리기능사
디자인				(단일)멀티미디어콘 텐츠제작전문가	컴퓨터그래픽스운용 기능사
해양		해양기술사	해양공학기사 해양자원개발기사 해양환경기사	해양조사산업기사	

[별표 1] 변경 후

국가자격 종목(제4조제1항관련)

직무 분야	등급	기술사	기능장	기사	산업기사	기능사
토목			*도화		*도화	도화
			*지도제작		*지도제작	지도제작
	지적		*지적	지적	지적	지적
			*측량			측량
	측량및지형공간 정보			측량및지형공간 정보	측량및지형공간 정보	
			*항공사진		*항공사진	항공사진
	해양			해양공학 해양자원개발		
					해양조사	
				해양환경		
					공간정보융합	공간정보융합
전자				전자계산기		전자계산기
					전자계산기제어	
정보기술				전자계산기조직 응용		
	정보관리		*정보처리	정보처리	정보처리	정보처리
				정보보안	정보보안	
	컴퓨터시스템응용				(단일)멀티미디어 콘텐츠제작전문가	
디자인					컴퓨터그래픽스 응용	

[비고] ‘*’ 표기 종목은 폐지된 종목으로 「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」 부칙 “폐지된 종목의 기술자격 취득자에 관한 경과조치”에 따라 계속 인정

폐지 종목	폐지일
도화기능장, 지도제작기능장, 지적기능장, 측량기능장, 항공사진기능장, 정보처리기능장, 도화기능사1급(산업기사), 지도제작기능사1급(산업기사), 항공사진기능사1급(산업기사)	1992.03.01